

제정일	2025. 05. 14
개정일	2026. 05. 28

계약학과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1조에 따라 우리 대학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우리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란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 이수 완료 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대학에서 산업체 등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대학에서는 산업체 등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권역”이라 함은 우리대학과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보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체와의 거리가 직선거리 기준 50km 이내인 경우로 본다. 다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5.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대학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우리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산업체
3. 제1항제2호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정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와 학생 인원이 1/3이상 되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조(계약사항)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우리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등의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등의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생에게 우리대학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이라는 것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제6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명칭 및 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수여학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각각 우리대학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의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통하여 모집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분야에 한해 채용을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제9조(학생선발)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경우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선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재교육형의 경우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선발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은 계약학과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별로 부과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③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제11조(교육과정) ① 계약학과는 우리대학의 정원 내에서 설치된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를 토대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위탁교육생의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4학기제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계약학과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협동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사관리) ① 계약학과 학기, 수업일수, 수업형태 등의 학사는 우리대학의 학사내규에 따른다.

② 산업체 등에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④ 계절학기의 개설기간은 8주 이내로 하며, 직전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학과 운영 신고) ①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학기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와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과폐지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산정 및 회계)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6조의 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총당한다.

② 필요경비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산출하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계약학과 회계는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우리대학 학칙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계약학과의 명칭, 수여학위 및 입학정원 변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제 11조 제3항 이동수업을 협동수업으로 변경, 제11조 제5항 신설, 제13조 제2항 매 학기 시작 2주 전까지 신고로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계약학과의 명칭 변경[별표1])

[별표 1]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학 과 / 전 공		학위명	입학정원
K-뷰티예술과 Department of K-Beauty Art	헤어디자인전공	미용전문학사	70명
	토탈뷰티전공	미용전문학사	